#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

발의연월일: 2024. 6. 3.

발 의 자:임미애·권칠승·이연희

박은정 • 김정호 • 강훈식

최기상・김 유・이용우

임호선 · 김성환 · 이달희

신정훈 • 문금주 • 신장식

한민수 · 김성회 · 강경숙

천하람 의원(19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,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.

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. 이로 인 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, 세수,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.

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「국가재정법」에 도입하고,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

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8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,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"를 "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,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,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,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3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"로 한다.

- 7의3.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
- 2의3.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

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 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 류)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 | 류) ① ------입세출결산(기금의 수입지출결 산은 제외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 1. ~ 7의2. (생 략) 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 <u><신</u>설> 7의3.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8. ~ 12. (현행과 같음) 8. ~ 12. (생 략)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하다. 1. ~ 2의2. (생 략) 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 2의3.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 <신 설> 산서 3. (생략) 3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생 략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,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 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, ----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,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지역 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 균형발전인지 결산서, 제2항제2 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 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, 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및

한다.	같은 항 제2호의3에 따른 지역
	<u>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</u>